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8.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80	이철규의원	2026.2.26.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5.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소위원회 회부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24	정동만의원	2026.3.27.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5.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 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
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
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

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산금 미회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

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제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혁신을”을 각각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u>기술혁신을</u>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 ----- <u>기술금융지원 등</u> <u>기술혁신을</u>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u>기술혁신을</u>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 ----- ----- ----- <u>기술금융지원 등 기술</u> <u>혁신을</u> ----- ---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술평가 및 <u>기술금융지원에</u> <u>관한 사항</u>	6. 기술평가 및 <u>기술금융지원의</u> <u>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u> <u>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u>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

· 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

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

상으로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

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집

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

금·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

· 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

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출연금·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

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

<u>제10조의2</u>(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생략)	<u>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u> <u>제10조의3</u>(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	--